

예 산 총 칙

2009년도 본예산

제 1 조 2009년도 세입·세출 예산총액 및 회계별로 일시 차입할 수 있는 최고액은 다음과 같다. (단위:천원)

구 분		세입·세출예산총액	일시차입한도액
합 계		232,975,776	6,989,273
일반회계		216,797,190	6,503,916
특별회계		16,178,586	485,358
기타특별회계	기타특별회계	16,178,586	485,358
	상수도사업특별회계	2,233,037	66,991
	수질개선특별회계	4,678,078	140,342
	하수도사업특별회계	766,600	22,998
	의료급여특별회계	135,500	4,065
	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특별회계	2,100,716	63,021
	주택사업특별회계	587,345	17,620
	발전소주변지원사업특별회계	368,248	11,047
	괴산청결고추상설직판장특별회계	631,288	18,939
	농공단지관리특별회계	208,100	6,243
	주차장사업특별회계	190,874	5,726
	미집행도시계획시설보상특별회계	3,500,000	105,000
	기반시설특별회계	778,800	23,364

제 2 조 세입·세출 예산의 명세는 별첨 "세입·세출 예산"과 같다.

제 3 조 일반회계 예비비는 4,389,610천원으로 한다.

제 4 조 일반회계 지방채차입한도액은 13,500,000천원으로 한다.

제 5 조 지방재정법 제47조 제1항 단서규정에 의한 총액인건비에 포함된 경비 및 동일부서에서 동일부문에 있는 정책사업 간의 경비는 상호 이용할 수 있다.